

2026년 폐업 및 새출발 지원 공고

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원상복구비 지원과 새출발바우처를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『2026년 폐업 및 새출발 지원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9일

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

□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인천소재 폐업 소상공인(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대상)
 - ※ 공고일 기준, 폐업 전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
 - ※ 소상공인 : [별표1]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를 모두 만족하는 자

○ 지원내용 : 원상복구비(필수) 및 새출발바우처(선택) 지원

가.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

-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(VAT 제외)
 - ※ 자기부담금 : 지원금(최대 600만원)을 제외한 공급가액 및 VAT
-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
 - ※ 전용면적 제한 없음
 - ※ 자가 소유 부동산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) 사업장 지원 제외

나. 새출발바우처 지원

-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
- 지원내용 :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취업·재창업을 위한 기술훈련(교육)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
 - ※ 2026년 1월 1일 이후 결재 및 사용 완료(소상공인 대표자의 교육 수료 또는 건강검진 수검 완료)한 금액에 대해서만 새출발바우처 지원

□ 지원내용
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(업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)

구 분	지 원 내 용
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	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 공사 등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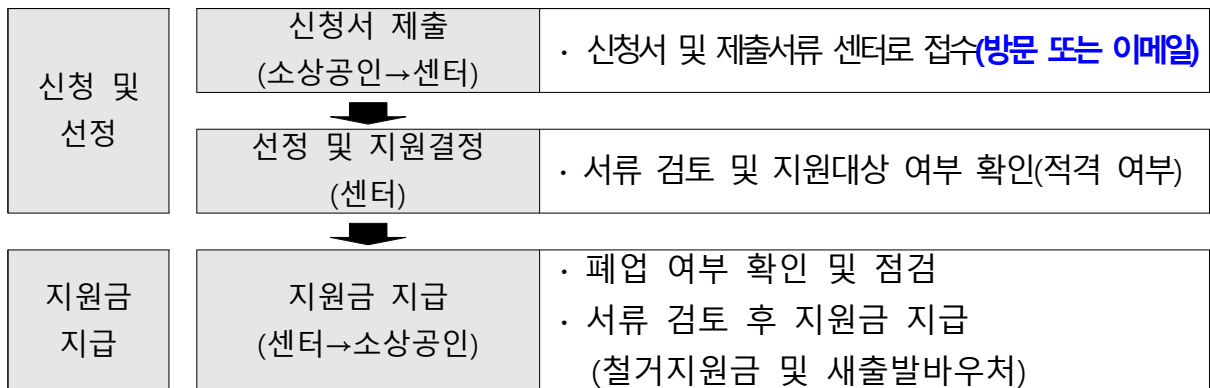
※ 자기부담금 : 지원금(최대 600만원)을 제외한 공급가액 + VAT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"희망리턴패키지" 철거비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

- 새출발바우처(업체당 최대 50만원 이내)

구 분	지 원 내 용
■ 기술훈련(교육)비	대표자(소상공인) 재취업·재창업을 위한 기술훈련(교육) 비용
■ 건강검진비	대표자(소상공인) 건강검진 비용

□ 지원절차



※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**최소 2주 이상** 소요

□ 신청·접수

- 신청 기간 : 2026. 3. 9.(월) 1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 - ※ 방문 접수 가능 시간 → 평일 09:00~17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 - ※ 상반기 중 센터 이전 예정으로 방문 전 담당자(032-715-4215)와 사전 일정 확인 필요
- 신청방법
 -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insupport.or.kr>) 접속 후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「폐업 및 새출발 지원」 신청 서식 다운로드
 - 이메일(tjgusdn2@insupport.or.kr) 또는 센터 방문 접수
 - 개별신청 원칙(대리접수 불가)

○ 사업 신청서류

- 철거지원금(필수) : 총 17종(새출발바우처 지원금 신청서류 별도 제출) 제출

필수 제출서류	폐업 완료자
① 비용 지급 요청서	[제1호 서식]
② 폐업사실증명원	폐업사실증명원(신청업체)
③ 사업자등록증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업체)
④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	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(철거업체 인천소재 및 철거 업종 확인)
⑤ 거래명세서	철거업체 거래명세서(업체직인 필수)
⑥ 전자세금계산서	전자세금계산서(철거업체 → 신청업체)
⑦ 이체확인증	이체확인증(신청업체 → 철거업체,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동일)
⑧ 통장 사본	대표자 통장 사본
⑨ 지방세 완납증명서	지방세 완납 증명서(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)
⑩ 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 (과세사업자,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)	[과세사업자일 경우]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
	[면세사업자일 경우]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⑫ 임대차계약서	점포 임대차계약서
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	[제2호 서식]
⑭ 지원금 신청서	[제3호 서식]
⑮ 지원금 대상 확인서	[제4호 서식]
⑯ 철거완료 보고서	[제5호 서식]
⑰ 사업참여자 설문	[제6호 서식]
⑱ 통합위임장	[제7호 서식, 공동대표 존재 시 제출]

※ 서류 작성 시, 유의사항
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내문 대표자 성명, 싸인 또는 도장 필수
-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(타 대표자 동의 필수, 통합위임장(제7호 서식) 작성)
-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(법인 포함, 대표자 기준)

※ 철거지원금 이체확인증 관련(폐업 신청업체 대표자 명의 철거업체 불가)

- 입금자 성명/수령자 성명/ 계좌번호/입금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불가

- 새출발바우처(선택) : 기술훈련(교육)비 또는 건강검진비 선택하여 **총 4종** 제출

기술훈련(교육)비	건강검진비
① 교육 수료증 ※ 수강기간 1개월 초과 시, 1개월까지 교육 이수 확인 서류 제출	① 진료비 세부내역서 ※ 건강검진 외 비용 지원불가 (수술비, 약값, 미용목적 시술/검사 등)
② 사업자등록증(교육업체)	② 진료비 계산영수증 ※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(병원, 의원) 검진 가능

▶ **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(신용카드 결제 시 '일시불' 결제만 가능)**
 [발급처]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

- ③ 신용카드 결제 전표(진료비 계산영수증 제출 시, 제출 불필요)
- ④ 카드대금 완납확인증(또는 이용대금명세서)

▶ **신청업체가 공급업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**

-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또는 현금영수증 1부
- ④ 공급업체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(이체확인증)

※ "본인 명의계좌" 만 지원 가능, 타인 명의계좌 사용 시 지원 불가

□ **지원제외 대상**(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, 지원대상에서 제외)

-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사업자
- 사업장 소재지가 '주택', '아파트'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- 사업장 소재지가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
-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- 소상공인 기준(매출액, 종사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[별표2]
- 센터 사업 및 타기관 유사사업 수혜자
 -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간('23.1.1.~25.12.31.) 센터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 전환 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(대표자 기준)
 - 최근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3년('23.1.1.~25.12.31.) 및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수혜자(대표자 기준)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, 단체 또는 조합
- 관련 법률 위반, 서류부실 등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□ **문의처 : 센터 생애주기지원팀 ☎032)715-4215**

별표 1

소상공인 기준(상시 근로자수,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②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별표 2

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